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폐지)제정안

1. 제정이유

○ 일몰제에 따른 유효기간(2018.8.10.) 도래에 따라「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훈령 제1호)」을 폐지·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규칙 유효기간 3년 연장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 기 타 : 별표 및 별지서식

행정안전부 훈령 제　　호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00월 00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 제46조의3 및 제49조의2에 따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시행 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이 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으며, 책임기술자에 대한 능력평가 및 연구수행 등 실적 증명은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별도 기준의 적용) ① 발주청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해당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8월 1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000호, 0000.0.0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호)은 폐지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5323

[별표 1]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제3조 관련)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6">가.
참
여
기
술
자</td><td></td><td>50</td><td></td></tr>
<tr><td>(1) 책임기술자</td><td>[20]</td><td></td></tr>
<tr><td>(가)등급</td><td>(5)</td><td>-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를 고려할 것
<예시 : 수자원분야>
<table><tr><th colspan="2">구분</th><th>특급</th><th>고급</th><th>중급</th><th>초급</th></tr><tr><td rowspan="2">인증서
미교부자</td><td>교육미이수</td><td>3</td><td>2</td><td>1</td><td>0</td></tr><tr><td>교육이수</td><td>4</td><td>3</td><td>2</td><td>1</td></tr><tr><td colspan="2">인증서 교부자</td><td>5</td><td>4</td><td>3</td><td>2</td></tr></table></td></tr>
<tr><td>(나)경력</td><td>(6)</td><td>-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예시 : 수자원분야>
<table><tr><th>20년이상</th><th>20년미만
~18년이상</th><th>18년미만
~16년이상</th><th>16년미만
~14년이상</th><th>14년미만</th></tr><tr><td>6.0</td><td>5.4</td><td>4.8</td><td>4.2</td><td>3.6</td></tr></table>*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경력기간 등 조정 가능</td></tr>
<tr><td>(다)실적</td><td>(7)</td><td>-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예시 : 수자원분야>
<table><tr><th>15건이상</th><th>15건미만
~13건이상</th><th>13건미만
~11건이상</th><th>11건미만
~9건이상</th><th>9건미만</th></tr><tr><td>7.0</td><td>6.3</td><td>5.6</td><td>4.9</td><td>4.2</td></tr></table>*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건수 등 조정 가능</td></tr>
<tr><td>(라)기술능력</td><td>(1)</td><td>-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해당용역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에 따라 상대평가</td></tr>
<tr><td>(마)업무관리능력</td><td>(1)</td><td>- 책임기술자의 업무관리능력(해당 용역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상대평가
<예시 >
<table><tr><th>최우수</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불량</th></tr><tr><td>1.0</td><td>0.8</td><td>0.6</td><td>0.4</td><td>0.2</td></tr></table>*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3">가.
참
여
기
술
자</td><td>(2) 분야별 책임기술자
(가) 등급

<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3">나.
유사용역수행실적</td><td>(1)실적</td><td>15
[7]</td><td>-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예시 : 수자원분야>
<table><tr><td>5건이상</td><td>5건미만
~ 4건이상</td><td>4건미만
~ 3건이상</td><td>3건미만
~ 2건이상</td><td>2건미만</td></tr><tr><td>7.0</td><td>6.3</td><td>5.6</td><td>4.9</td><td>4.2</td></tr></table>*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td></tr>
<tr><td>(2)금액</td><td>[7]</td><td>-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예시 : 수자원분야>
<table><tr><td>70억이상</td><td>70억미만~
60억이상</td><td>60억미만~
50억이상</td><td>50억미만~
40억이상</td><td>40억미만</td></tr><tr><td>7.0</td><td>6.3</td><td>5.6</td><td>4.9</td><td>4.2</td></tr></table>*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td></tr>
<tr><td>(3)전차용역
수행실적</td><td>[1]</td><td>- 업체의 전차용역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등)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td></tr>
<tr><td rowspan="2">다.
신용도</td><td>(1)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
실벌점 등</td><td>10
[7]</td><td>-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자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td></tr>
<tr><td>(2)재정상태
건실도</td><td>[3]</td><td>-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예시 : 신용평가등급 기준>
<table><tr><td>회사채</td><td>A-이상</td><td>A-미만
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
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어음</td><td>A2-이상</td><td>A2-미만
A3-이상</td><td>A3-미만
B-이상</td><td>C이하</td><td>미제출</td></tr><tr><td>기업신용</td><td>A-이상</td><td>A-미만
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tr><td>점수</td><td>3.0</td><td>2.7</td><td>2.4</td><td>2.1</td><td>0</td></tr></table><별표 3 참조 ></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 rowspan="3">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td><td>(1)개발실적</td><td>15
[2]</td><td>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table>
<tr><td>구 분</td><td>5년미만</td><td>5년이상~
10년미만</td><td>10년이상~
20년미만</td></tr>
<tr><td>특 허</td><td>100%</td><td>80%</td><td>60%</td></tr>
<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
</table>
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td></tr>
<tr><td>(2)투자실적</td><td>[10]</td><td>1)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예시>
<table>
<tr><td>구분</td><td>3%이상</td><td>3.0%미만
2.5%이상</td><td>2.5%미만
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
1.0%이상</td></tr>
<tr><td>점수</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
</table></td></tr>
<tr><td>(3)활용실적</td><td>[3]</td><td>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지정된 신기술은 용역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예시>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신기술, 특허, 실용신안)</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 부 평 가 방 법</th></tr>
<tr><td></td><td>(3)활용실적</td><td></td><td>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5">가중치</td></tr>
<tr><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
<tr><td>활용건수(건)</td><td>5
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r>
<tr><td>활용금액(억원)</td><td>20
이상</td><td>20미만
18이상</td><td>18미만
16이상</td><td>16미만
14이상</td><td>14미만
12이상</td></tr>
</table>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td></tr>
<tr><td rowspan="2">마.
업
무
중
첩
도</td><td>(1)책임기술자</td><td>10
[6]</td><td>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
＜예시＞ 업무중첩도 세부평가기준 작성사례
사례① 만점기준을 15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50%로 할 경우
사례② 만점기준을 20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
사례③ 만점기준을 30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50%로 할 경우
<table>
<tr><td>사례</td><td>만점</td><td>만점×0.9</td><td>만점×0.8</td><td>만점×0.7</td><td>만점×0.6</td><td>…</td></tr>
<tr><td>①</td><td>150%미만</td><td>150~200%</td><td>200~250%</td><td>250~300%</td><td>300~350%</td><td>…</td></tr>
<tr><td>②</td><td>200%미만</td><td>200~300%</td><td>300~400%</td><td>400~500%</td><td>500~600%</td><td>…</td></tr>
<tr><td>③</td><td>300%미만</td><td>300~350%</td><td>350~400%</td><td>400~450%</td><td>450~500%</td><td>…</td></tr>
</table>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해당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td></tr>
<tr><td>(2)분야별
책임기술자</td><td>[4]</td><td>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
＜예시＞ 업무중첩도 세부평가기준 작성사례
사례① 만점기준을 15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50%로 할 경우
사례② 만점기준을 20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
사례③ 만점기준을 30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50%로 할 경우
<table>
<tr><td>사례</td><td>만점</td><td>만점×0.9</td><td>만점×0.8</td><td>만점×0.7</td><td>만점×0.6</td><td>…</td></tr>
<tr><td>①</td><td>150%미만</td><td>150~200%</td><td>200~250%</td><td>250~300%</td><td>300~350%</td><td>…</td></tr>
<tr><td>②</td><td>200%미만</td><td>200~300%</td><td>300~400%</td><td>400~500%</td><td>500~600%</td><td>…</td></tr>
<tr><td>③</td><td>300%미만</td><td>300~350%</td><td>350~400%</td><td>400~450%</td><td>450~500%</td><td>…</td></tr>
</table>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해당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td></tr>
</table>

※ 비고)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2]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제3조 관련)

Ⅰ. 일반사항

1.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자 참여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세부평가기준(별표) 작성의 적정성
   나.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다.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PQ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

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9. 발주청은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전차용역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평가자료 제출 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따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따른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자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기초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감독·감리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으로 입찰시)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

을 적용하되,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라.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해당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마. 참여건설기술자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자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자(이하 “계약직전문기술자”라 한다)를 해당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자는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 참여건설기술자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자. 책임기술자의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양식(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평가서와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하여야 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란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5. 유사용역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라.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6. 전차용역이란 해당 용역의 전 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7.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은 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8.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별표 3)할 수 있다.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9.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및 방재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

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해당 설계 등의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으로 한다.

다.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용역업자가 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및「자연재해대책법」제60조제2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방재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0.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

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따라 산정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12. 발주청은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해당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가감점에 대하여는 별표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3] 신용평가등급의 기준(제3조 관련)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지 제1호 서식]

용역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백상지 80g/㎡)

1. 기술능력 평가서

1.1 해당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해당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5년 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해당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해당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 기간, 작업 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 간 연계 고려)

■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지 제2호 서식]

연구수행(참여) 실적 증명서

신청인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소 재 지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 수행 실적 증명 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내용					
기업 부담금 내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 고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합 계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수행(참여) 실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